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00188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1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인진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최선순위 설정	2022.12.9. 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7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입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 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배복선	505호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2.01.11.~	168,000,000		2022.1.12.	2021.12.27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: 배복선)	505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01.11.~ 2024.01.11.	168,000,000		2022.01.12.	2021.12.27.	2025.4.7.	
<p><비고></p> <p>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배복선):주택임차권자인 배복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임.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00188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1-2, 401-55, 401-57

더뷰스데이트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58번길 22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

업무시설 및 공동주택

지1층 217.26㎡

1층 134.67㎡

2층 356.97㎡

3층 356.97㎡

4층 356.97㎡

5층 356.97㎡

6층 356.97㎡

7층 356.97㎡

8층 356.97㎡

9층 356.97㎡

10층 356.97㎡

11층 356.97㎡

12층 356.97㎡

13층 356.97㎡

14층 300.12㎡

15층 300.12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5층505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0.3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1-2

대 135.5㎡

2. 동 소 401-55

대 222㎡

3. 동 소 401-57

대 167.9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. 525.4분의 7.20

감정평가액

163,000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주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3	163,000,000	16,300,000
2회	2026.04.15	114,100,000	11,410,000
3회	2026.05.18	79,870,000	7,987,000
4회	2026.06.24	55,909,000	5,590,900